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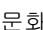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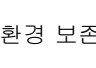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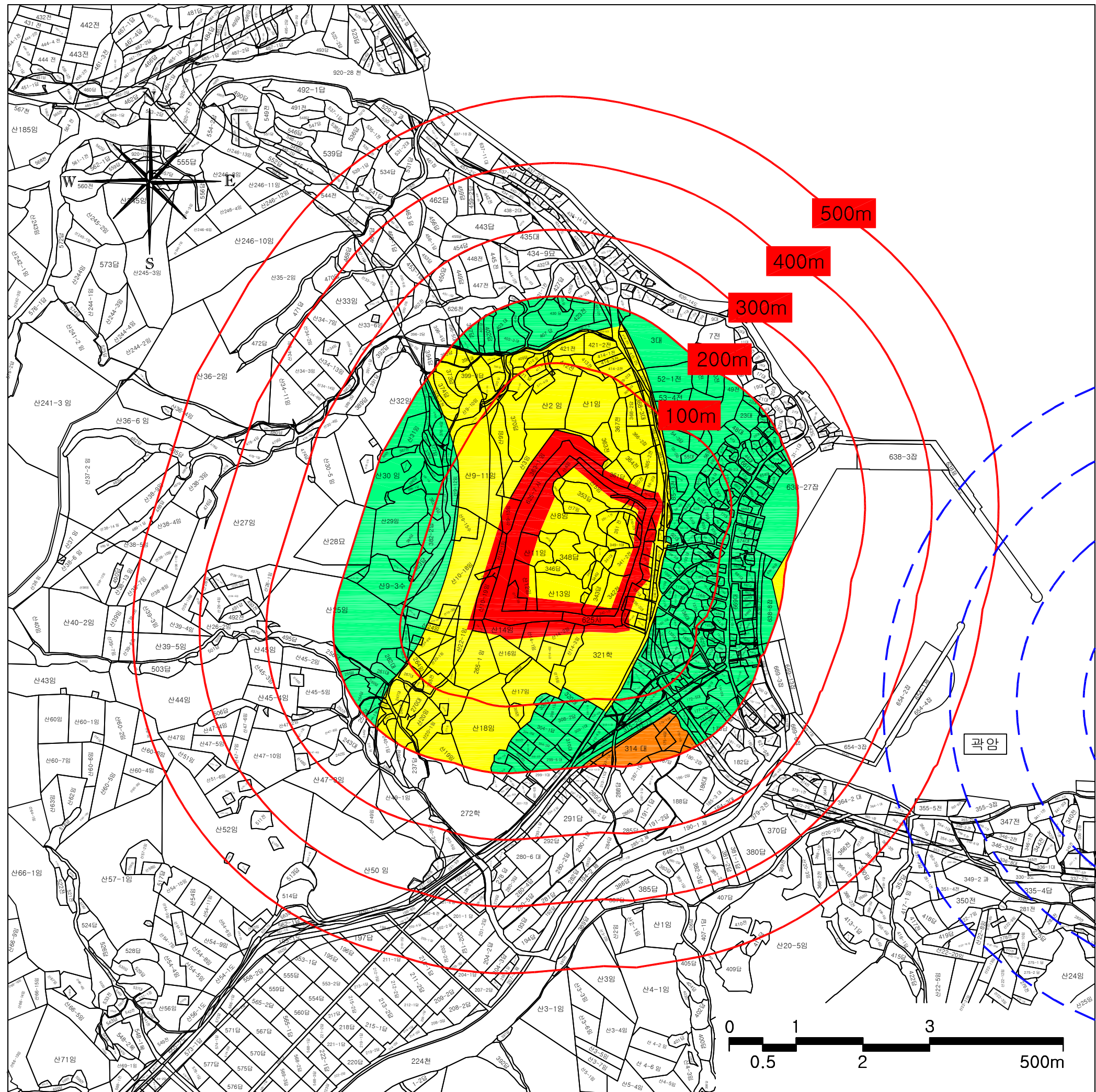


-  대상문화재
 유포석보(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7호)
 소재지 :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25 외
-  문화재지정구역
  문화재보호구역
-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(100~500m)
 
-  구역별 허용기준

구분	허용기준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별심의 •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·보수, 개축, 재축은 기존 규모, 기존 위치 내에서 허용
2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슬라브 : 8m 이하, 경사지붕(3/10 이상) : 12m 이하 신축, 증축, 개축 허용 •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연면적, 최고높이 범위 이내에서 개축, 재축 허용 • 공원 내 반드시 경사지붕 • 건축형식, 재료, 색채에 대해 울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 심의
4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

- 공 통**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
 -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가능(단,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설치)
 - 모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(1~4구역) 내에서 도로, 교량공사 등을 포함한 공공사업의 경우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
 - 모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(1~4구역) 내에서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공사의 경우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
 - 모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(1~4구역) 내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공사는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
 - 모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(1~4구역) 내에서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상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 -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허용기준 설정구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둘 중 더 엄한 설정구역의 허용기준을 적용(예,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)
 - 모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(1~4구역) 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둘 중 더 엄한 설정구역의 허용기준을 적용(예, 국가지정 2구역과 시지정 1구역이 중복될 경우 시지정 1구역 적용)
 - 모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(1~4구역) 내에서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
 - 1~3구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공사 시 건축물 등 시설물은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사용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,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)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